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6. 6. 14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6. 6. 1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6회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총무위원회(96. 6. 19)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원태희)

가. 제안이유

- 방법원의 경찰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여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 도모

나. 주요골자

- 방법원의 경찰서 파견근무제 폐지
-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53세→58세)하여 타직종과의 형평성 유지
- 직명변경(방법원→지도원)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방법원의 인원은 몇 명이며 파출소 근무 안 할시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 총원 47명이며, 각 동 및 필요한 부서에 배치 할 예정입니다.
○ 방법원을 원대복귀시키지 않는 방안은 없습니까?	○ 주간에 근무하는 조건을 방법원들이 원하고 있고 정부시책도 원대복귀시키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체계적인 심사내용

○ 없음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3호
의 결	96. 6. 28
년 월 일	(제46회)

제출년월일 : 1996. 6. 14

제 출 자 : 부천시장

제안이유

○ 방법원의 경찰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여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 도모

주요골자

○ 방법원의 경찰서 파견근무제 폐지

- 근무상한연령을 연장(53세→58세)하여 타직종과의 형평성 유지
- 직명변경(방법원→지도원)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구 분	1 종	경 노 무
직 명	지 도 원	사 환
근무상한연령	58세	58세

비고 : 지도원은 조례 제1404호(1996년 2월 29일 공포)시행 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방법원은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p> <p>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1종</th> <th>2종</th> <th>경노무</th> <th>근무상한 연령</th> </tr> </thead> <tbody> <tr> <td>방법원</td> <td></td> <td></td> <td>55세</td> </tr> <tr> <td></td> <td></td> <td>사 환</td> <td>58세</td> </tr> </tbody> </table>				1종	2종	경노무	근무상한 연령	방법원			55세			사 환	58세	<p>[별표]</p> <p>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종</th> <th>경노무</th> </tr> </thead> <tbody> <tr> <td>직명</td> <td>지도원</td> <td>사 환</td> </tr> <tr> <td>근무상한 연령</td> <td>58세</td> <td>58세</td> </tr> </tbody> </table>			구분	1종	경노무	직명	지도원	사 환	근무상한 연령	58세	58세
1종	2종	경노무	근무상한 연령																								
방법원			55세																								
		사 환	58세																								
구분	1종	경노무																									
직명	지도원	사 환																									
근무상한 연령	58세	58세																									
<p>비고 : 방법원은 조례 제943호(1989년 2월 15일 공포)시행 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p>				<p>비고 : 방법원은 조례 제1404호(1996년 2월 29일 공포)시행 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p>																							
<p>제4조의2(방법원의 파견)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 직공무원중 방법원을 경찰서·지서 또는 파출 소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삭제></p>																							